

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 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3. 12. 1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3호 - 58호
- 라. 상정일자 : 2003. 12. 6

2.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,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
-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,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조단체의 범위 및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정함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
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

- 예산의 지원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회단체 장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함
-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계리 하도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정액 보조단체별 지원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 보조금과 정액 보조단체를 뮤어서 매년 직전 년도 당초예산 면적, 인구수를 반영해 한도액을 산정 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엄격히 심사하여 배분함으로 인해 종전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나 선심성 지원 등을 차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한 제도임.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- 다만,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면 위원수는 道의 경우 15인, 市·郡의 경우 9인 이내로 구성하면 가능함에도 15인으로 구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필요
- 9인으로 수정할 경우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으로 당연직 위원은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야 할 것으로 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(생 략)

6. 수정안 요지

- 제8조 제2항 중 “15인”을 “9인”으로 하고 “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”로 변경하며,
-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은 “기획감사실장, 종합민원 실장, 자치지원과장”로 수정하고
- 제8조 제4항을 신설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

(수정안 대비표)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생 략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<u>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<u>당연직 위원 : 종합민원실장, 재무과장, 자치지원과장, 경제과장</u>2. <u>생 략</u> (신설) |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<u>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.</u>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<u>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종합민원실장, 자치지원과장</u>2. <u>현행과 같음</u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.</u></p> |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- o 본 조례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일괄 계상하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엄격히 심사하여 배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절차와 심사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
- o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- o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은 보조금 지원사업 등과 이해관계가 적고 사심이 없는 분들을 위촉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당부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